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법 사항 개선사항 공표 근거 마련(안 제7조제1항단서)

- 어린이이용시설의 위법사항을 공표한 뒤 이용시설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나. 안전교육 이수 의제 근거 마련(안 제9조제6항)

-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사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연도 교육 이수로 보는 법적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포 후 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공포 내용에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추가하여 남은 게재 기간 동안 공포할 수 있다.

제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안전교육 대상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연도의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⑦ 그 외 교육 이수증 등 안전교육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2제1호 중 “2022년 7월 1일”을 “2026년 12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조사 결과의 공표) ① 행정안전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,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,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.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7조(조사 결과의 공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다만, 공표 후 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공표 내용에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추가하여 남은 게재 기간 동안 공표할 수 있다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안전교육의 방법 등) ① ~ ⑤ (생략) <신설>	제9조(안전교육의 방법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안전교육 대상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연도의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⑦ 그 외 교육 이수증 등 안전
<신설>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211